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84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오세희 · 박희승 · 맹성규
채현일 · 위성곤 · 박수현
박균택 · 서영교 · 전진숙
안태준 · 한정애 · 허성무
이주희 · 최혁진 · 이춘석
이용우 · 김원이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그런데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를 활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며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매장임차인의 독자적 거래 지위를 침해하며,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함.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상호 사용행위 및 소비쿠폰 우회수령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체계

와 연동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매장임차인의 명의 사용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와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의 행위를 통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소비촉진 목적의 소비쿠폰,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을 우회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에 관하여는 매장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32조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1조의2,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2조”를 “제11조의2,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 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 ----- ----- ----- ----- ----- ----- ----- ----- -----제11조, 제11조의2, <u>제12조부터 제14조까지</u> ----- ----- ----- ----- -----. 1. 2.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매장임차인의 명의 사용 금지)</u>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u>매장임차인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와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의 행위를 통하여 정부·지방자치

	<u>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이</u> <u>시행하는 소비촉진 목적의 소</u> <u>비쿠폰,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u> <u>을 우회적으로 취득하거나 취</u> <u>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에</u> <u>관하여는 매장임차인의 동의</u> <u>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유통업</u> <u>자의 위반행위로 본다.</u>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제32조(시정명령) -----
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	-----제11조의2,
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	-----
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	-----
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	-----
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	-----
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	-----
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	-----
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	-----
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	-----
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범위	-----
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

---.

제35조(과징금) ① -----

-----제11
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

1조의2, 제12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